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분야	임용계급	선발예정인원	성별	시험과목
합계			105명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지방소방사	64명	남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구 조	지방소방사	10명	남	(필수)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구 급	지방소방사	3명	남		
운 전	지방소방사	5명	여		
전 기	지방소방사	10명	남		
정보통신	지방소방사	3명	남		
항공조종사	지방소방위	1명	남	실기시험으로 대체 * 항공조종사 분야는 별도 공고에 의함	
소방관련학과	지방소방사	3명	남	(필수)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5명	여		

II 시험일정

구분	장소 공고일	시험 예정일	합격 발표일
원서접수	20. 2. 24.(월) ~ 2. 28.(금) → 취소기간 : 20. 2. 24.(월) ~ 3. 1.(일)		
필기시험	3. 23.(월)	3. 28.(토)	4. 17.(금)
체력시험	4. 17.(금)	4. 27.(월) ~ 4. 29.(수)	5. 04.(월)
신체검사/서류전형 (인적성검사)	5. 04.(월)	5. 11.(월) ~ 5. 13.(수)	5. 22.(금)
면접시험	5. 22.(금)	6. 01.(월) ~ 6. 03.(수)	6. 24.(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III 응시자격

□ 응시자격 등 기준일

채용구분	종류	기준일(보유 등)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일
	거주지 제한	최종시험일
	운전면허	최초시험일
공개경쟁	가점 관련 자격증 등	최초시험일 전일
경력경쟁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결정을 취소함

□ 응시 결격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붙임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경력경력채용 등의 요건 등)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응시연령

채용구분	계 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지방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9.1.1. ~ 2002.12.31.
경력경쟁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9.1.1. ~ 2000.12.31.
경력경쟁(항공조종)	지방소방위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4.1.1. ~ 1997.12.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도 포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신체조건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붙임 2】
-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붙임 2-2】

□ 거주지 제한

채용 구분		거주지 요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하 '공채'	<p>※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p> <p>1. 2020년 1월 1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p> <p>2.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사람</p>
경력경쟁 채용시험	이하 '경채'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가. 공·경채 공통(항공조종사 제외)

- 운전면허

채용구분	응시자격 등
공채	도로교통법 제80조 의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채	

나. 경채분야

- 공통사항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다만, 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가능

○ 자격 및 경력

분 야	자격(경력) 제한											
구 조	<p>▶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p>											
	<table border="1"> <tr> <td>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 <td>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td> </tr> <tr> <td>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td> <td>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td> </tr> <tr> <td>③ 기 타</td> <td>특수전부대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td> </tr> </table>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	③ 기 타	특수전부대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											
③ 기 타	특수전부대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구 급	<p>▶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자격증 취득일 기준)</p> <p>①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를 한 경력</p> <p>②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p>											
구 급	<table border="1"> <tr> <td>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td> </tr> <tr> <td>※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td> </tr> <tr> <td>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td> </tr> <tr> <td>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td> </tr> <tr> <td>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td> </tr> </table>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분 야		자격(경력)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운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④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⑤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외) 소방기관 및 공항항만소방대 자체소방대에서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배연차, 구조공작차를 운전한 경력은 포함 * 지역소방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한 소방대 포함
	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 관련 자격증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기능장,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소방 관련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유사 학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규칙 제4조(소방관련학과)에 따라 별표2의 소방관련 과목【붙임13】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유사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

IV 원서접수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 28.(금) 18:00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취소기간 : 2020. 2. 24.(월) ~ 3. 1.(일)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사진등록 (3개월 이내 촬영)
 - 사진파일(JPG) 규격은 반명함(3cm×4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 사진파일 확장자가 다른 경우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
 - 응시자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일반 스냅사진,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접수확인 : 응시생 원서접수 완료 후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출력기간 : 2020. 3. 23.(월) 이후
 - ※ 매 시험응시 시 반드시 지참하도록 할 것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소방장 이상 7천원, 소방교 이하 5천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에만 납부 응시수수료 환불(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미결제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됩니다.
- 해당시·도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산특전

○ 가점입력

- 시 기 : 원서접수 시
- 방 법 : 가점관련 등록번호 입력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에 유의

-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취득한 대상자는 **【XI 유의사항/ 2. 원서접수】 참조**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가산 대상자 및 비율표 **【붙임 3, 3-2】**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필기시험 적용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사무관리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가점은 **각각 적용**

V 필기시험

□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채)10:00~11:40 / (경채)10:00~11:00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 시험과목

구 분	과목	
공채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¹⁾ , 사회, 과학, 수학	
경채	구조, 구급, 운전, 전기, 정보통신	국어, 영어(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²⁾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수학 :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
- 사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 **【붙임 4】**
- 소방관계법규

¹⁾ 공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법(약칭)·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²⁾ 경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약칭)(법, 시행령)

□ 문제 이의제기 신청

- 가(정)답안 공개 : 3. 28.(토) 16:00
- 장 소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신청기간 : 3. 28.(토) 16:00 ~ 3. 29.(일) 24:00
- 장 소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절 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붙임 5】** :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내 용 :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결정

- 조정점수 : 공채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 【붙임 6】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 **2배수**의 범위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VI 체력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붙임 7】
 -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방법 : 【붙임 7-2】
- 이의제기 운영 : 시험관리위원회(판정관 전원참여) 개최 후 결과 통보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퍼센트(3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도핑테스트 시료채취 【붙임 7-3 ~ 7-5】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 도핑테스트 안내문 : 【붙임 7-3】 참고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7-4】 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VII 서류전형

□ 서류제출

- 제출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 심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분야	제출서류
공 통	① 기본증명서 1부(상세) ⇨ 응시자 본인 기준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소변동이력, 및 병적사항 포함 ④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전체경력으로 발급 ⑤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 1부 ⇨ 원본 지참 ⑥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⑦ 신원진술서 3부(단면인쇄)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포함 【기타】 해당자만 제출 ○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 1부(전역예정일표기)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개경쟁	①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경력 경쟁	구조 ①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병무청) 1부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고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구급 ①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군복무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으로 응시한 자) ② 경력증명서【붙임 8-3】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운전 ①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② 경력증명서【붙임 8-3】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전기 ①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② 경력증명서【붙임 8-3】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정보 통신 ①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② 경력증명서【붙임 8-3】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관련 학과 ① 졸업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교 미졸업자 : 성적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급여내역 확인자료(통장사본 등) 제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붙임 8】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서류제출일 기준) 이내에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제외)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週)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 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비정규직 근무경력 계산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 인정하지 않음)
-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 8-2】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제출서류는 추후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음

VIII 신체검사 /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지정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따라 실시 후 그 결과를 서류전형 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 제출서식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 2-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불인정

※ 신체검사 주의사항

-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쇄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고, **수기작성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신체검사 기간 중 **측정한 신체검사서만 유효**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2】

□ 인·적성검사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소집 후 질문지 작성(향후 별도 공고 안내)
- 검사결과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IX 면접시험

□ 면접시험

- 대상자 : 신체검사·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붙임 9】

구분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
총 5항목 60점	3항목 30점	2항목 30점

○ 합격자 결정

- 합격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불합격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X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기준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 구급분야 및 소방관련학과 분야는 남·여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다른 성별에서 추가 선발

XI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시험 응시표 출력 후 → 모든 시험절차 지참

○ 응시자는 모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 실시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 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안내문 【붙임 10】

2. 원서접수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최종시험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1】**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불가)
- 응시 결격자는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가 불가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취소할 수 없습니다.
 - ※ 단, 가산특전과 관련한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 **가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하고**
 -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각 호의 가점(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입력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
 -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를 취득한 응시자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 **특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수기 채점하지 않음)**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이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
 -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모자, 마스크를 휴대하거나 착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시험 중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등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험운영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4. 체력시험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손 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가능 합니다.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신체검사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 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채용시험(필기, 체력, 면접 등)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소방행정팀)
- 연락처 : 062-613-8021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치평동) / 우편번호: 61945

- 1. 응시결격 사유 등 1부.
-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 2-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 2-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2-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 3-2.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1부.
- 4.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 5. 필기시험 문제 의의제거서 1부.
- 6.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1부.
-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 7-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 7-3.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7-4.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7-5.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 8.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경력분야) 1부.
 - 8-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 8-3.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1부.
 - 8-4.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 9.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부.
-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 11.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13. 소방관련 과목 1부. 끝.
- 14. 전국 소방분야 관련학과 및 유사학과 현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붙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 2-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파노조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비뇨기계통	<p>가. 중증 요실금</p> <p>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p> <p>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p> <p>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p>
8. 내분비계통	<p>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p> <p>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p> <p>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p> <p>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p> <p>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p>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p> <p>나. 혈소관 감소성 자반병</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p> <p>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p> <p>마. 진성적혈구 과다증</p> <p>바. 백혈병</p>
10. 신경계통	<p>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p> <p>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p> <p>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p> <p>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p> <p>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p> <p>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p> <p>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p>

구 분	내 용
11. 사지	<p>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p>
12. 귀	<p>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p>
13. 눈	<p>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p> <p>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p> <p>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p> <p>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14. 정신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p> <p>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p>
15. 혈압	<p>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p> <p>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p>
16. 운동신경	<p>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p>

붙임 2-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1)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신장		cm	체중	kg
			혈압	
시력	맨눈	좌: 우:	색신	정상
	교정	좌: 우:		
		(색각)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치아		호흡기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검사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 합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격여부	[] 불합격	
	[]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3	국립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4	구포성심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051-330-3996
5	대동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6	동래보생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537
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8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10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11	영도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57
12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6 (온천동)	051-590-3384
13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종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14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26
15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7
16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목기념보생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17	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좌천동)	051-630-0421
18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1
19	학교법인 동의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21	해동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700
2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2가)	053-200-5791
2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2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434
25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26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940-7025
27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28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29	광주호헌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30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6~7
31	대청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서부 계백로 1322 (정림동)	042-589-6553~4
32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33	중앙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80번길 10 (신정동)	052-226-1100
34	아주대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2번선택
35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6	의정부백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43-8383
37	강릉아산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38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313
39	삼척의료원	강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033-570-7418
40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033-741-1670~2
41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0114, 2번선택
42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	041-570-720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4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녕로 77 (웅진동)	041-962-1111
4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4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4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47	예수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063-230-1515
48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0
49	익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20
50	동군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70
51	정읍아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140
52	남원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52
53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리로 18	061-260-6500
54	나주종합병원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061-330-6114
55	성기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56	여천전남병원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061-690-6000
57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000
58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5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75-0005
60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32-8901
61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길 14 (상동동)	055-733-0000
62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055-680-8114
63	의료법인 성녘의료재단 맑은샘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055-731-1240
64	의료법인 갑골의료재단 갑골장유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65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66	강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강일병원)	055-822-0100
67	의료법인환영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68	베데스다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69	웅상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59 (명동)	1600-7582
7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71	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72	진주고려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진주고려병원)	055-751-2500
73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7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055-750-8000
75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2
76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77	한마음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8
78	삼성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6012
79	에스엠지연세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542
8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41
81	연세에스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055-548-7794
82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83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84	한마음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064-750-9000
8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580
86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000
87	한국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701

붙임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각 과목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 적용범위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3% 또는 5%

-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범위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 가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붙임 3-2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유의사항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각각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점수 가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최종합격(발급)되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자격증(면허증) 합격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붙임 4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점검)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치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족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 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 7-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더(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중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 7-5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치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 8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경력분야)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 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무 경력을 의미하고, 유아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붙임 8-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다는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병원	2017	주 입	95.05.01.~97.12.01.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붙임 8-3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2013.12.31.	비상근
				(예시)	2014.01.01.~2014.12.05.	시간제 주 20시간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서 명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 (전화 : -)

2020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I. 평가요소 등

○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 및 각 요소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또는 적성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II.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응시계급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정사유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공채·경채)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분 야	과 목
사회과학 분야 (12)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사, 소방학개론
실무분야 (10)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사범처리론, 소방검사론, 위험물시설론, 화재조사론, 소방행정실무
자연과학 분야 (14)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건축소방학, 소방경보시스템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정보통신론, 위험물질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학개론

- 비 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2. 2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
 3.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위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연번	대학	학과	비고
1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2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3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5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6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7	건강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8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9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10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11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12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13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14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15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16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17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18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19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0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21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22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3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4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25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6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7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28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29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0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31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2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33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34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35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연번	대학	학과	비고
36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7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38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39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40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41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2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3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44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5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6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47	송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8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49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50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51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52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53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54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55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56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57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58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59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60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61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62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63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64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65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66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67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68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69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70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